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 즉 “대한민국”이 건립된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평등과 정의를 신생 공화국의 준거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재벌체제와 함께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정의의 의미를 복원할 것을 요청한다.

■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준거로서의 평등과 정의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다스리는 체제는 1910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붕괴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대한민국의 인민” 스스로 왕조를 타파한 것은 아니지만, 왕조가 일제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 민주공화국을 건립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였으며, 그 의지의 출발점이 삼일운동이라고 할 때, 삼일운동은 새로운 “법통”을 세운 “삼일혁명”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는 추후 보안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혁명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제3조)을 천명함으로써 구체제의 신분질서를 혁파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야만을 교화하고 폭력을 이겨내는 것은 더 강력한 야만과 폭력이 아니라 인도(人道)와 정의(正義)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서하였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에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신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 대한민국인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에 건립된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헌법은 평등을 천명했던 1919년 임시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고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특히 이렇게 규정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제8조) 이 규정은 지금도 유효하다(제11조).

이것은 대한민국이 구체제의 신분질서로의 회귀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은 또한 사회정의를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제84조)

1948년 헌법이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정의가 “한계”로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경제적 자유는 사회정의의 한계 내에서 보장되고, 사회정의는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작용한다. 시장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시장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이 되고 만다. 1948년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은 사회국가이며, 사회국가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회정의의 한계 내에서 시장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를 갖추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구현하는 국가이다.

1948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특히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표방한 것에 불과하며, 이른바 장식적 헌

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견해들이 있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꿈이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 유리된 백일몽이 아니다. 이상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이 곧바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의 것은 완벽한 것에 의해서만 착상될 수 있다.”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 왜 잘못되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추종하든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로 간주되는 숫자가 이끄는 대로 나아갈 뿐이다.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은 서양의 헌법, 예를 들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948년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다양한 텍스트 중에서 사회정의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텍스트를 준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 자체가 곧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48년 헌법의 규정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이후 개정된 1962년 헌법에서 수정되었다. 1962년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제111조)

1948년 헌법과 1962년 헌법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헌법에서는 사회정의를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사회정의의 한계 내에서 보장되었는데, 1962년 헌법에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사회정의를 그것을 보완하는 가치로 언급된다.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자유의 관계가 전복된 것이다. 단순한 자리바꿈이 아니다. 원칙과 예외의 전복이다.

1962년 헌법 조항은 군사독재 기간 내내 존속하다가 1987년 시민혁명으로 군사독재가 끝난 후 새로운 민주헌법으로 수정된다. 1987년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

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9조) 이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1962년 헌법과 비교할 때, 당장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첫째, 1962년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주체를 “개인”에 한정했는데 반하여, 1987년 헌법은 여기에 “기업”을 추가하였다. 이제 기업은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다. 오늘날 기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보다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둘째, 1962년 헌법은 “사회정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87년 헌법은 이것을 “경제의 민주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그것은 혹시 독재정권이 “민주정의당”을 정당 이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까. 1987년 헌법은 사회정의를 경제상 자유의 한계로 재정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상 자유가 국가 개입의 한계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운신할 뿐이다.

1987년 헌법이 “사회정의”를 삭제하고 기업의 자유를 명시하였지만,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자유가 사회정의의 이상을 훼손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정의 개념이 들어오고 나간 맥락은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정의가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자유가 경제민주화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업과 노동자, 경영과 노동을 대등한 견지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1948년 헌법의 시도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이 노동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영권(구조조정)과 노동권(파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른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방법론을 노동법에 노골적으로 적용

한 것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것과 계량할 수 없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순 비교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2천 년 전에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고대 공화정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정의라는 것이 인민들이 성문화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복종이라면, 또 혹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효용에 의거해서 측정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법률을 소홀히 대할 것이며, 가능하기만 하다면 법률을 위반할 것이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자기한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여길 것이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결과가 오네. 그것이 자연본성에서 유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효용 때문에 정의가 설정되고 효용에 의해서 정의가 폐기된다면 말일세.”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사회정의를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헌법에서 사회정의의 원칙을 지워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전 속에 글자로 찍혀 있는 사회정의의 원칙은 언젠가 사람들 가슴 속에 정의감으로 살아나고, 그리하여 죽은 듯 누워 있던 네 글자를 살아 있는 글자로, 활자(活字)로 깨워 일으킨다. 예를 들어 “공적인 것(res publica)”을 “사적인 것(res privata)”으로 사유화하는 유사-정치가 판을 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제1조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꿈으로 치부당했다. 그러나 법치의 이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헌법이 가식이 아니라 엄연히 법이었다는 당연한 진실을 새삼스럽게 상기시켜준다.

법전에서 사회정의를 삭제하면서 현실에서도 사회정의를 사라졌다. 그러자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이다.

■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었다. 산업화 시대에 노동하는 자들은 “산업역군”이라고 불렸다. 이 말은 전체 노동자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노동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념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양차 대전은 식민주의와 산업주의를 하나로 결합시켰다. 식민주의는 산업주의를 식민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산업주의는 식민주의를 서양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차 대전은 총력전이였다. 한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이였다. 총동원 체제에서 모든 존재는 에너지로 간주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의 본질은 자연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것인데, 현대 기술은 단순히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록 닦아세우는 데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며 흐르는 물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댐은 강을 수력의 저장고로 취급한다. 그리고 강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드러내도록 닦아세운다. 댐이 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댐에 의하여 갇히고 저장되고 채굴된다. 물레방아는 강을 강으로 대접하지만 댐은 강을 수자원의 공급처로만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현대 기술 문명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생체에너지의 공급처로 취급한다. 노동자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천연자원과 유사하게 채굴할 수 있는 인간자원으로 취급된다. 양차 대전은 산업주의를 공장 안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시켰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인 원리로 일반화시켰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도 이런 것이 낯설지 않다. 1987년에 노동부가 작성한 『1987년도 노동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노동정책의 주요임무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데, 노동문제가 “사회안정, 국가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전 사회에 파급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동정책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 생산성 지상주의는 “전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임”이라고 선언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금은 바뀌었을까,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노동자”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IMF 체제 이후 노동자는 다시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업과 시장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시절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과 사회가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질서의 재생산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리 선전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절을 살고 있다. 권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독재에서 자유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산업주의를 운용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체제, 인간을 이윤과 경쟁의 무한계도를 돌리는 동력원으로 전락시키는 체제, 이 시장전체주의 체제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고, 노동자의 존엄은 여지없이 훼손당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었지만, 빈약한 사회안전망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방파제로 인정받기보다는 마치 차별과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보증하는 제3자(Le Tiers Garant)의 형상이 사라진 곳에서는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이다. 정글에서는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을 지배하고, 강한 계급이 약한 계급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노동자는 또 다른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다. 갑질은 노동관계가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가 관철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노동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더욱 크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을관계(lien de Gab-Eul)”라는 말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갑과 을은 원래 관행상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도급인, 사용자, 임대인)와 타방 당사자(수급인, 노동자, 임차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 갑을관계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을관계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지배종속적 신분관계를 의미한다. 갑을관계는 곧 일종의 주종관계(lien d'allégeance)이다. 그런데 그 신분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계약적 용어이다. 계약과 신분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계약적 신분관계를 의미하는 갑을관계는 현재 한국 사회가 유사 신분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다.

문제는 이 지배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곧 재벌체제(régime de chaebol)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적자생존 사회가 초래하는 능력주의적 예민함은 “흙수저들”에게만 적용되고, “금수저들”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귀족노동자계급”의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이 격렬하게 이어

지지만, 재벌 3세가 임원으로 특혜 채용되고 16억 원의 증여세 납부만으로 재벌 총수의 지위를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재벌의 군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에 일정 정도 좌절감을 안겨 주었고, 그 반작용으로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형국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렇게 갈파한 바 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하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재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함께 갖지 않으면 그 돈은 거의 쓸모가 없다.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그 돈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다. 그것은 좁은 의미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힘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한 나라의 사람 전체를 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다.

이 지배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1919년 ILO 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1948년 제헌헌법이 이구동성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신, 즉 사회정의의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존 러스킨이 말한 바와 같이, “정의의 작용은 부의 직접적인 힘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난이 주는 최악의 무력감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정의의 의미 : 노동관할권 개념에 관하여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이다”라고 하는 『학설취찬』의 정의는 “몫”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산업주의는 이 몫을 물질적인 재화로 환원함으로써 정의의 문제를 수량적 교환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즉 산업주의에서 노동은 단위 시간당 임금으로 계량화되고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정의의 문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정의를 주어진 틀 안에서 재화의 정당한 분배 원리를 모색하는 문제로만 보게 되면, 정작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그 틀을 결정하는 원천적인 권력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이미 필라델피아 선언은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핵심 부분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학설취찬』의 정의에서 “뭉”으로 번역된 단어의 라틴어 원문은 “jus”이다. 이 유스(jus)는 권리 또는 법을 의미한다(프랑스어에서 권리와 법은 같은 단어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어 “뭉”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재화의 차원과 법/권리의 차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각자에게 속해야 할 재화를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분배의 규칙을 결정하는 권한 그 자체를 합당하게 분배하는 차원으로 확장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차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뭉”을 “법”으로 확장시켜 해석한다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법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가 된다. 각자에게 각자의 법을 돌려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을(juris) 말할 수 있는(diction) 권한, 그것은 곧 “관할권(jurisdiction)”이다. 그러므로 정의란 곧 관할권을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노동하고, 대신 노동의 대가만 합당하게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노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에는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말이 있다. 동양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은 목소리(voice)인데 동양은 마음(心)이다. 마음은 사실 헤아리기 어렵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우리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여론이나 민심의 이름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는 상황을 종종 경험한다. 이심전심이다. 특별히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

심으로 민심이 형성되고, 웬일인지 위정자는 위축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서양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 서양은 직접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 기독교의 신은 애초에 보이스(voice)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보이스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imago Dei) 창조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보이스는 단순히 사운드가 아니다. 보이스는 이성이 인간의 언어능력을 통해 밖으로 구현된 것이다. 기독교 왕국에서 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든 기독교인이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듯이, 세속의 왕국에서 이성의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인간은 정치공동체의 동참자로 인정받는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비롯하여 재벌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과 전횡을 비판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항의와 시위는, 생존을 위해서 모욕과 갑질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지난 세대의 정의관과 다른 정의관을 보여준다. 이 노동자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와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30세대”는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 세대이다. 이전 세대가 생존을 위해서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켰다면, 이들은 “직장에서 도구로 쓰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일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정투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내용으로서 분배와 인정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현대 정의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분배정의론은 정의의 문제를 경제적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반면에 인정투쟁론은 문화적 또는 사회적 인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생산된 부의 분배 문제로 정의론을 환원하고, 후자는 이미 천명된 정체성의 인정 문제로 정의론을 환원한다. 양자는 모두 노동 그 자체의 문제를 정의론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상황은 노동에서 사회정의의 의미, 즉 ILO 헌장에 나오는 구절로 말하자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travail réellement humain)”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란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노동 그 자체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를 동물이나 기계처럼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노동조건이 인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란 아마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노동일 것이다. 그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 즉 말이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엇보다 말하는 존재이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곧 노동자에게 말을, 보이스를 허용하는 노동일 것이다.

말을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이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자신의 사유를 담아낸다는 점이다. 자신이 하는 노동 속에 자신의 정의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노동, 그것을 옹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노동, 그것이 ILO 현장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의 의미일 것이며, “노동다운 노동 (travail décent)”의 의미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법을 말한다는 것은 나의 정의관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관할권의 분배는 필연적으로 정의관의 충돌을 야기한다. 노동법은 이 정의관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한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경영관할권(jurisdiction du management)과 노동자의 노동관할권(jurisdiction du travail)의 충돌을 고무하고, 그 충돌이 한 단계 더 높은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삼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노동삼권은 단순히 임금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삼권은 노동자가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법을 말하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선진국의 노동법은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노동관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파업권의 강한 보장을 통해서 경영관할권과 노동관할권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리고 독일은 반대로 파업권보다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서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 두 나라의 제도가 갖는 공통점은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실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굳이 발언권을 주고자 애쓰지는 않는다. 사용자는 원래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 나라들은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주고자 하는가? 한 사람만 발언할 수 있는 곳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뜻하는 라틴어 디타토르(dictator)는 원래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노동관할권의 보장은 민주공화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다. **KLI**